

주간 글로벌ICT동향 & 이슈리포트

전문가 오피니언

베트남 온라인 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 최근 동향 및 시사점

김경섭 법무법인(유)광장 미국변호사

이순성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

서론

최근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상승, 시장성 확대, 특히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베트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IT/ICT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사이버보안법 (Cybersecurity Law: Law No. 24/2018/QH14) 제정을 통해 인터넷상 국가 보안 보호 및 사회질서 안전의 보장을 꾀함과 동시에 베트남에서의 온라인상 정보에 대한 규제는 물론 직접 베트남에 진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내 데이터 보관 및 사업장 설립과 같은 소위 데이터 현지화 (Localization) 관련 의무 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베트남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취약했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뒤따르고 있어서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간접적으로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법령 내용과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관련 최근 동향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국가 보안 보호 및 사회질서 안전의 보장과 관련 개인·기관·기업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사이버보안법은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되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은 2018년 11월 2일 최초 버전이 발표된 이후 2019년 2차 버전이 나온 이후에도 외국계 기업의 부정적 반응, 의견 수렴 과정,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4년 가까운 상당 기간 동안 발효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무상 법령 규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 8월 15일에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이 베트남 시행령 Decree No. 53/2022/ND-CP(이하 ‘시행령 53’)으로 최종

승인되면서 전격적으로 2022년 10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이버보안법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외국계 기업들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고 있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터라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의 최종 승인 및 1달여 직후 발효에 당혹감을 보이고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하여 시행령의 발효 내지는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울이기도 하였으나 이미 베트남 국회 승인 및 발효 결정이 이루어진 터라 시행령 규정 관련 많은 의견을 베트남 정부측에 제시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최근 동향

베트남 정부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하는 대신 사이버보안법, 사이버정보보안법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행령 제정을 시도하면서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 초안을 2021년 2월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행령은 개인정보 정의 및 분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침해 처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행령이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사이버보안법의 경우 발효까지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과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거쳐서 시행령 Decree 13/2023/ND-CP(이하

‘시행령 13’)으로 최종 승인되어 올해 2023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되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총 7장, 43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베트남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국가 보안 보호 및 사회질서 안전의 보장과 관련 개인·기관·기업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법 조항들 중에서 베트남에 진출 또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조항은 제26조인데 각 조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항은 ‘사이버보안법 제16조 1~5항에 명기된 정보와 기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웹사이트, 포털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보안법 제16조 1~5항에 명기된 금지된 정보는 베트남 정부, 국기, 지도자 등에 대한 비방 정보, 정부에 대한 폭력, 반대 집회 등을 선동하는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제품, 화폐 등 관련하여 경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정보 등입니다. 이와 같은 1항 내용은 국가 보안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후 2항부터는 베트남 관련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항은 베트남에서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사용자 계정 개설 시 사용자 정보 확인; 사용자 정보 및 계정 비밀 보호; 사이버보안 위반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관련부서의 서면 요청 시 사용자 정보 제공;
- b) 사이버보안법 제16조 1~5항에 명시된 금지된 정보 발생할 경우 공안부 관련부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 해당 정보 삭제 및 금지; 이와 관련된 내역(log)을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이버보안 위반 조사를 위해 보관;
- c) 베트남 공안부 또는 정보통신부 관련부서의 요청 시 사이버보안법 제16조 1~5항에 명시된 금지된 정보를 올린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거부

따라서 인터넷상 사용자의 정보 확인과 비밀 보호 외에도 사이버보안 관련 베트남 경찰 및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의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3항은 해외 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에서 개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들 관계에 대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 사용자들이 생성한 정보를 수집, 분석 또는 처리 활동을 하는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기업은 베트남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

이상과 같은 정보를 베트남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기업 중 해외 기업은 베트남에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 내용 그대로라면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물리적으로 베트남에 직접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 조항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베트남에 보관하고 베트남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조 4항에서 베트남 정부는 3항 관련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을 2018년 11월 2일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개인 정보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들을 베트남 내에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베트남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아직은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도록 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견 수렴 중인 시행령이 발효 되면 사이버보안법 관련 의무들을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사이버보안법 조항들 내용 중에서 베트남에 진출 또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정부, 국기, 지도자 등에 대한 비방 정보, 정부에 대한 폭력, 반대 집회 등을 선동하는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제품, 화폐 등 관련하여 경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정보와 기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웹사이트, 포털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금지
- 베트남에서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금지 정보에 대한 시정 처리 의무: 사용자 계정 개설 시 사용자 정보 확인; 사용자 정보 및 계정 비밀 보호; 사이버보안 위반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베트남 공안부 (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관련부서의 서면 요청 시 사용자 정보 제공; 공안부 관련부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 해당 정보 삭제 및 금지; 이와 관련된 내역(log)을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이버보안 위반 조사를 위해 보관; 베트남 공안부 또는 정보통신부 관련부서의 요청 시 사이버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를 올린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거부
-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관련 의무: 베트남에서 개인 정보, 서비스 사용자들 관계에 대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 사용자들이 생성한 정보를 수집, 분석 또는 처리 활동을 하는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보의 베트남내 보관 의무 및 해외 기업의 경우 베트남 공안부

결정으로부터 12개월 이내 베트남에 지점 (Branch)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주요 내용

앞에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이 초안 발표 이후 상당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발표까지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설명 드렸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반대 내지는 개선 요청 의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반영되어 최종안이 결정되었으면 이러한 내용 조정 과정에 대하여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초안 제24조는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베트남에 보관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사용자 개인 정보와 관련 데이터가 베트남에 보관되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직업, 직위, 거주지, 연락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개인식별 번호, 시민권 번호, 여권 번호, 사회보험 번호, 신용카드 번호, 건강 상태, 의료 기록, 생체인식 정보; 베트남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장치로부터 업로드, 동기화 또는 가져오기를 통해 생성된 정보; 베트남 서비스 사용자들 관계에 대한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사용자가 연결 또는 상호작용을 한 친구, 그룹. 다음으로 시행령 초안 제25조는 베트남 내 정보 보관

및 지점/대표사무소 설립 의무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1항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베트남에 정보를 보관하고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a)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추가 서비스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통신 서비스, 데이터 보관 및 공유 서비스, 도메인 주소 제공,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중개, 운송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비디오 게임, 이메일
- b) 본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 사용, 분석 및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 c) 서비스 사용자가 사이버보안법 제8조 1~2항에 명시된 행위(국가안보 및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국가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 기업
- d) 사이버보안법 제8조 4항 규정을 위반(사이버보안 집행을 방해), 제26조 2항 a-b호 규정을 위반(사용자 정보 확인, 비밀 보호, 베트남公安부 요청 관련 위반 등)하는 기업

따라서 상기와 같은 시행령 초안 제25조 1항 조건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물리적으로 진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 관련 정보들을 베트남 내에 보관하고 베트남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초안 동조 2항은 베트남公安부가 동조 1항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베트남에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시행령 초안 제29조는公安부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기업은 베트남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시행령 초안 제25조 조건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사용자 관련 정보들의 베트남 내 보관 및 지점/대표사무소 설립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나, 베트남公安부의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일종의 1년간 의무 이행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발효될 시행령 최종안의 내용 및 법 집행 실무에 따라 추후 정확한 규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1일자로 발효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53은 시행령 초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효까지의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주목할 만한 사항 관련 아래와 같이 그 최종안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관련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기업의 사업 내지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중개, 운송 연결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비디오 게임, 메시지, 음성 통화, 영상 통화, 이메일 및 온라인 채팅 형식으로 정보 관리 운영

- 이상과 같은 적용 대상 외국 기업의 사이버 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베트남 공안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하이테크범죄예방국(Department of Cybersecurity and Hi-tech Crime Prevention)의 경고 통지가 있을 경우 베트남 내 데이터 보관 및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 적용됨
- 이상과 같은 2개 조건을 충족한 외국기업은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관련 의무 적용에 대한 베트남 공안부 결정 수령 후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내 데이터 보관 및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외국기업은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관련 의무 적용 예외의 경우로 불가항력 사유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해당 사유 발생시 3영업일 이내에 불가항력 여부에 대하여 베트남 공안부 확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시행령 53은 베트남 내 데이터 보관 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 법령 집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보관 형식(예를 들어, USB에 저장 등)을 인정해 줄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어떠한 형식을 사이버보안법 상 인정해줄 지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공식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앞에서 설명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행령이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사이버보안법의 경우 발효까지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이후 발효가 되었으며, 2021년 2월 9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행령 초안 발표 이후 올해 2023년 7월 1일 발효되기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이 결정된 내용 조정 과정에 대하여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2021년 2월 9일에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행령은 개인정보 정의 및 분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침해 처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제23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공안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하이테크범죄예방국에 설립하고 6인 위원으로 구성
- 제2조: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하면서 동조 2항은 기본 개인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혈액형, 성별, 출생지, 주소지, 이메일, 학력, 민족, 국적,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결혼 여부, 온라인 활동 정보로 규정하고, 3항은 민감 개인정보를 정치 및 종교 성향, 건강정보, 유전정보, 신체 정보, 삶과 성 관련 정보, 범죄 관련 정보, 금융정보, 개인위치정보, 사회관계 정보로 규정함

- 17 ~ 21조: 개인정보 취급자(업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 17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시행 의무로서 개인정보 비밀유지 보안, 익명화, 암호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기록 보관 등의 의무 규정
- 18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완비 관련하여 본 시행령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정,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 접수 및 대응 관련 규정 제정 등을 규정
- 20조: 민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로서 민감 개인정보는 취급/처리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 21조: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관련하여 동조 1항은 베트남 국적인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조건으로 본인 동의, 정보 원본은 베트남내 보관, 이동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최소 본 시행령 수준임을 증빙하는 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면 승인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상기 1항 조건 충족 없이 가능한 경우로 본인 동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면 승인, 개인정보 취급자(업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호조치 이행 협약과 같은 조건 적용을 규정함
- 22조: 개인정보 취급자(업체)의 시행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먼저 동조 1항은 벌금 VND 50,000,000 ~ 80,000,000을 대부분의

시행령 조항 규정 및 의무 위반 시 적용, 2항은 벌금 VND 80,000,000 ~ 100,000,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민감 개인정보 취급/처리 등록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대한 2회 위반시에 적용, 3항은 최대 벌금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업체) 총 매출액의 5%를 1항에 대한 3회 위반시, 2항에 대한 2회 위반시에 적용하며, 4항은 추가 제재로서 2항 위반시 개인정보 취급/처리 중지(1~3개월), 민감 개인정보 취급/처리 및 개인정보 국경간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한편 2023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베트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행령 13은 의견 수렴용으로 발표되었던 시행령 초안 내용과 대비하여 수정, 삭제 또는 추가된 여러 사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조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안	최종안
1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정의: 'data about individuals or relating to the identification or ability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Article 2.1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정의: 이전 보다 구체화 'information in the forms of symbols, letters, figures, images, sounds or similar forms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that i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person or may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a particular person.'
2	N/A	Article 2.4.h) 민감정보 대상 추가: 금융기관 및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 취득한 정보 추가 'Client information from credit institutions, foreign bank branches, intermediary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other permitted organizations, including: client identification, information on accounts, deposits, deposited assets, transactions and information on securing parties at credit institutions, bank branches, and intermediary payment service providers.'
3	'Data processing entity'에 대한 정의만 있었음	Article 2.1 아래 각 표현들에 대한 정의 추가: 1) 정보 관리 주체(Data controlling entity/Controller): organization or individual deciding the purposes and means of personal data processing 2) 정보 처리 주체(Data processing entity/Processor): organization or individual processing personal data on behalf of the controller, via a contract or agreement with the controller 3) 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Data controlling and processing entity): organization or individual simultaneously deciding the purposes and means of, and directly implement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4	N/A	Article 3.4 개인정보의 매매를 금지함
5	N/A	Article 8 아래 각 금지 행위 추가: 1)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개인 정보 처리; 2) 베트남 정부에 반하는 정보 및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인 정보 처리; 3)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인 정보 처리; 4) 관할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개인정보 보호를 남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6	N/A	Article 10 정보주체(data subjects)의 의무 추가: 1)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 2) 타인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 3)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 완전하고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 4)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선전 및 전파에 참여; 5)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예방 및 방지에 참여

7	개인정보 처리 통지가 필요한 경우: I.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 및 활동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 II. 법률,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III. 정보주체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IV.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Article 13.4 개인정보 처리 통지가 필요한 경우 조정: I.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 및 활동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 II.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 국가 기관에서 처리되는 경우
8	민감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에 등록하도록 함	Article 28.3 민감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9	개인정보 처리 위반 사항 및 페널티 규정	위반 사항 및 페널티 규정 삭제

이러한 베트남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행령 13의 규정들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주체 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정보주체의 침묵 또는 무응답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처리될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조직/개인;
-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i) 서면, 구두 또는 동의란에 체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동의를 반영하는 구문을 통해 또는 동의를 반영하는 기술을 선택하거나 동의를 나타내는 다른 행위를 하도록하여야 함
- ii)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일 것. 여러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정보주체가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개별) 목적에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목적을 열거해야 함

- iii) 전자적 또는 검증 가능한 형식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있는 형태일 것

한편,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i) 정보주체가 실종 또는 사망 선고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가족 구성원(예: 배우자, 부모)의 동의가 필요. 정보주체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가 허용되지 않음
- ii) 정보주체가 만 7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정보 처리 전 아동 본인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2) 민감정보(Sensitive personal data)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민감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는 개인의 법적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 a) 정치적, 종교적 견해;
- b) 혈액형 정보를 제외한 건강기록부에 기재된 건강상태 및 인적사항
- c) 인종 또는 민족에 관한 정보;
- d) 개인의 유전적 또는 후천적 유전적 특징과 관련된 유전 정보;
- e) 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 f) 개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 g) 법 집행 기관이 수집하고 저장한 범죄 및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
- h) 금융기관, 외국은행의 지점, 결제서비스 제공자, 기타 인가된 기관의 고객에 관한 정보(법령에 규정된 고객식별정보, 계좌, 예금, 예탁자산, 거래, 신용기관, 은행, 은행 지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증인인 단체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 i) 위치 서비스를 통해 식별된 개인 위치 정보;
- j) 특별 보호가 필요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 특정 개인정보

3) 마케팅 및 광고 관련 개인정보보호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안내, 마케팅 및 광고의 내용, 방법, 형태, 빈도 등을 고객에게 알고 있음을 전제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류

- 제출 주체: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처리 개시 시점부터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짐(별도의 데이터 관리 주체에 용역을 주지 않는 이상). 별도 정보 관리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관리 주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함

- 제출 주체는 데이터 처리 후 60일 이내에 시행령 4번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공안부 내 Department of Cybersecurity and Hi-tech Crime Prevention(DCHCP)에 제출하여야 함. 수정 또는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시행령 5번 양식을 작성하여 DCHCP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 관리/처리 주체; 담당 개인/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처리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 처리, 삭제 기간; 예상되는 문제 및 피해; 그러한 문제와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 등

5) 국경간 정보 전송(Cross-border data transfer)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 전송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따른 영향 평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a) 정보주체의 동의 및 b) 전송인 및 수령인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 ii) 전송인은 DCHCP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해 해당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를 지며, 개인정보 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본 1부를 DCHCP에 제출하여야 함;
- iii) 전송인은 정보 전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정보

전송에 대한 정보와 담당 조직 및 개인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DCHCP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한국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행령 13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유의사항 및 대응
1	Article 1.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역내 뿐만 아니라 역외(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베트남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본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베트남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하 기술된 사항들에 대한 고려 및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Article 11. 정보주체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의 동의 취득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동의 취득이 필요하며 동의는 인쇄나 서면으로 제공 가능한 형식이어야 함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상 수집되는 정보, 사용 목적, 처리 방식 및 처리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보주체(고객)에 설명하고 동의를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각 목적 별로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구성 및 안내를 하여야 함
3	Article 13. Article 28.3. 일반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처리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 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처리 목적, 수단, 처리 주체 등 정보를 포함)가 필요하며, 민감정보의 처리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며, 동의와 같이 통지도 인쇄나 서면으로 제공 가능한 형식이어야 함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거나 민감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정보 처리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 또는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Article 21. 마케팅 및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서비스 내지 상품 광고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자신들의 사업 활동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만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마케팅 서비스 내지 상품 광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영위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를 확인하고 동의를 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Article 23.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사항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개인정보 관리 주체에 위반 사항 발생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관리 주체 또는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위반 사항 발생 시로부터 72간 이내에 베트남 공안부 DCHCP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따라서 각 개인정보 처리 주체 및/또는 관리 주체인 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통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6	<p>Article 24. 개인정보 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관리 주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개시 시점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서를 준비하여公安부 DCHCP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주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서(시행령 부록 Form 04 활용)를 위 관할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기 제출한 문서 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함(시행령 부록 Form 05 활용) 따라서 대상 사업자들은 1차적으로 Form 04를 사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고(해당 자료는 관할 당국의 감사에 대비하여 항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함), 내용 변경 발생시 Form 05를 사용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또한, Form 04 제출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 보호 담당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하여야 함
7	<p>Article 25. 국경 간(cross-border) 정보 전송 영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전송 주체인 개인정보 관리 주체, 처리 주체, 관리 및 처리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개시 시점에 국경 간(cross-border) 정보(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영향평가 문서를 준비하여公安부 DCHCP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정보 전송 주체는 국경 간(cross-border) 정보 전송 영향평가 문서(시행령 부록 Form 06 활용)를 준비하여 위 관할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기 제출한 문서 상의 내용 변경 시 해당 내용의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시행령 부록 Form 05 활용) 위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대상 사업자들은 1차적으로 Form 06을 제출하고(해당 자료는 관할 당국의 감사에 대비하여 항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함), 내용 변경 발생시 Form 05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8	<p>Article 28. 민감 개인정보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 개인정보 처리 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9	<p>Article 43. 발효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본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담당 부서 지정 의무를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음
10	<p>페널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페널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행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 13은 별첨 Appendix에 여러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별첨 양식들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개요
Form 01	개인정보 제공 요청(개인)	정보주체 또는 권한 있는 개인이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
Form 02	개인정보 제공 요청(단체 및 기업)	조직/기업(정부 주체가 권한을 부여한)이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
Form 0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지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또는 처리 주체)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 사용. 이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DCHCP에 통보하여야 함
Form 04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출 통지	정보 관리 주체(또는 정보 관리 또는 처리 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영향평가 문서를 DCHCP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 해당 통지서 및 첨부서류는 개인정보 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Form 05	프로필 내용 변경 통지	개인정보 영향 평가 문서 또는 국가 간 정보 전송 영향 평가 문서에 대한 수정, 업데이트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
Form 06	국경 간(cross-border) 정보 전송 영향 평가	국경 간 정보 전송 영향 평가 문서 양식. 국경 간 정보 전송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후 6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DCHCP에 제출해야 함

맺음말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발효된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물리적으로 베트남에 직접 진출은 하지 않았더라도 베트남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서비스 사용자 관련 정보들의 베트남 내 보관 및 베트남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도 인터넷상으로 베트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 정보 확인 및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 그리고 사이버보안 관련 베트남 경찰 및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의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점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베트남 법령들의 주요 규정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쉽게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일부 법령 조항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실무상 베트남 관계 당국에서 단속 및 규제 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지 두고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 신규로 제정 및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벌금의 경중 및 금액 수준이 매우 과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초안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사이버보안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들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해당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